

수원지방법원 2024. 9. 11 선고 2023가단539957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의료법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

담당변호사 이은일

피 고 기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

담당변호사 유재민

변 론 종 결 2024. 8. 30.

판 결 선 고 2024. 9. 11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51,150,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기금은 1990년경 B 주식회사(이하 'B'이라 한다)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, C 등은 당시 피고기금에 대하여 B의 피고기금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피고기금은 1991년 C 등을 상대로 위 연대보증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1991. 9. 26. 서울민사지방법원은 91가합24255 사건에서 피고기금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.

다. 피고기금은 2001. 8. 18.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,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21248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, 2002. 2. 7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"C, B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피고기금에 178,676,105원 및 그 중 136,200,87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"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라. 피고기금은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채17358호로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2012. 10. 22.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이하 '이 사건 압류추심명령'이라 한다)을 받았고,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.

마. 한편 C은 주식회사 D(이하 'D'이라 한다)에 대하여 2011. 4. 6.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6155호 판결에 기한 판결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D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E, F(병합), G, H, I(중복)호 부동산 경매(이하 '이 사건 경매'라 한다) 절차에서 2013. 7. 30. 위 판결금채권에 따른 배당요구권자로서 388,109,589원을 배당받았다.

바. 다만 C에게 배당된 위 388,109,589원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 공탁(이하 '이 사건 공탁'이라 한다)되었고, 결국 피고기금은 2013. 8. 16.경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중 351,150,850원을 추심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, 갑 제1호증의 2, 갑 제3, 4호증,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재단의 주장

피고기금이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은 C의 채권이 아니라 원고재단의 채권이다. 그럼에도 피고기금은 C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재단 재산인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추심하였으므로, 피고기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추심액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고, 원고재단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. 따라서 피고기금은 위 추심액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.

가.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경매에 따라 C에게 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. 이 사건 배당금은 C이 D에 대해 갖는 2011. 4. 6.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6155호 판결에 기한 판결금채권이다. 위 판결금채권은, D이 2009. 2. 5. C에게 경기 가평군 J 대 8,731㎡와 위 지상 건물 3동을 임대(이하 ‘이 사건 임대차’라 한다)하였음에도 이를 인도해 주지 않아서 부담하게 된 3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이다.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재단의 설립 및 원고재단 산하 요양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, 당시 C은 부친인 망 K의 유지를 받들고자 그가 출연한 재산으로 원고재단 설립 및 산하 요양병원 개원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.

나. 이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재단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절차였고, 원고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도 전부 망 K이 출연하였으며, C의 자금은 전혀 투입되지 않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, C과 D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망 K의 유지에 따라 추후 설립될 원고재단의 사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, 그 당시에는 원고재단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명의만을 C으로 했던 것에 불과하며, 실질적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C이 아닌 원고재단으로 보아야 한다.

다.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경매절차상 배당금채권 역시 C이 아닌 원고재단에 귀속되어야 하고,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은 C이 아닌 원고재단의 권리이다.

3. 판단

가. 인정사실

- 1) 망 K(1923년생, 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, 2003년경 사고로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은 후 사실상 거동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.
- 2) 망인은 2003. 6. 25. C을 양자로 입적하여 C으로 하여금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.
- 3) 망인은 자신의 현금 8억 원을 출연하였고, C은 2007. 1. 10. 위 8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C의 처 L 명의로 원고재단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. C은, 향후 원고재단 산하 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, 2007년과 2008년경 M노인전문병원, N노인전문병원 등을 설립 또는 인수하였다. 위 병원의 설립 및 인수자금 역시 대부분 망인의 자금으로 충당되었고, C의 자금은 투입되지 아니하였다.
- 4) C은 위 병원들에 추가하여 향후 설립될 원고재단 산하 병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2009. 2. 5.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. 9. 23. 원고재단이 설립되었고 망인은 2011. 2. 6. 사망하였다.
- 5) 그러나 D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, C은 D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, 2011. 4. 6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가합86155 사건에서, D에 대해 C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, 갑 제6호증의 1, 갑 제7호증의 7,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

- 1) 원고재단의 청구는, C이 아니라 원고재단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.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재단의 설립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이므로, 원고재단의 주장 내용 자체로, 권리귀속주체로서 현존하지 않았던 원고재단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.

2) 원고재단의 주장 내용은, 비록 C이 행위자로서 관여하긴 하였으나 그는 향후 설립될 원고재단을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권리의무는 이후 실제 설립된 원고재단에 귀속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회될 여지가 있다.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(갑 제7호증의 7)상 임차인 명의를 'C'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 그와 같은 주장 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C과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, 향후 설립될 원고재단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, 원고재단의 설립 후 원고재단의 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.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(갑 제7호증의 7)에는 원고재단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거나,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원고재단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, D이 원고재단의 설립 예정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. 또한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,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날은 2010. 8. 20.로서 원고재단의 설립일인 2009. 9. 23. 이후이고,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0가합86155호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한 날은 2011. 4. 6.임에도, 원고재단은 C에 의해 제기된 위 소송절차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고, 위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.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, 위 인정사실, 즉 원고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망인이 부담하였고, C은 단지 망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원고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, 그러한 사실만으로는,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원고재단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가 원고재단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재단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이유 없는 원고재단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안재천